서울특별시 마포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의 안 23-172 번 호 관련

발의년원일 : 2023. 11.

발 의 자 : 복지도시위원장

1. 수정이유

안 제2조 제1호 조문 띄어쓰기를 수정하여 조례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함

2. 수정 주요내용

가. 안 제2조제1호 중 "마포구미래교육지구"를 "마포구 미래교육지구"로 한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"마포구미래교육지구"를 "마포구 미래교육지구"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	제2조(정의) 이 조례에	제2조(정의)
서 사용하는 용어의	서 사용하는 용어의	
뜻은 다음과 같다.	뜻은 다음과 같다.	
1. "학생" 이란 서	1. "마포구미래교육	1. <u>"마포구 미래교</u>
울특별시 마포구	<u> 지구"</u> (이하 "미	육지구"
(이하 "마포구"	래교육지구"라 한	
라 한다) 소재 초ㆍ	다)란 서울특별시	
중・고등학교에 재	교육감(이하 "교	
학 중인 학생 및 해	육감"이라 한다)	
당 연령의 청소년을	이 미래교육지구 사	
말한다.	업을 추진하기 위하	
	여 지정한 자치구를	
	말한다.	

[위의 수정부분 이외의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개정안과 같음]